

의안
번호

447

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04. 11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447호
- 다. 제출일자 : 2022. 03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04. 01.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설립·운영하는 박물관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성북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4조)

나. 개관 및 관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9조)

다.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5조)

라.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~제19조)

마.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자료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~제23조)

바.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~제28조)

사.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~제31조)

아.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예산팀과 협의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2. 02. 24. ~ 2022. 03. 16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제정취지 등

- 본 제정안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성북구 박물관의 관리·운영에 통합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제정안은 성북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34개의 조문 및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제정안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박물관 시설 및 업무,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제2장 개관 및 관람은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,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, 관람시간 등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비롯하여 관람 제한, 행위 제한 등 운영상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.
-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안 제10조부터 제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현재 성북선잠박물관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해 선잠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.
- 제4장 자료의 자료 수집은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박물관의 자료 구입과 취소, 자료의 기증 및 기탁자료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제5장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자료평가위원회는 안 제20조부터 제23조

까지 자료수집 및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실무위원회, 자료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- 제6장 자료의 관리는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자료관리관 등을 지정하여 전시자료의 관리를 위해 수장고 관리, 자료의 대여 방법 및 자료의 분실, 훼손, 도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입 및 변상책임에 관한 근거조항 등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.
- 제7장, 제8장은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제9장 보칙은 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준용규정 및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부칙의 경우, 안 제2조에 의해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하며, 안 제3조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안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갈음토록하고 있음.

□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성북근현대문화관 건립에 맞추어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성북구 박물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기준과 전시자료 수집 등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.

- 또한 향후 건립되는 박물관의 운영을 위해 각각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능률성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제정안은 성북구 전체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통합 규정을 마련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사료됨.

참고

성북근현대박물관

성북근현대박물관 시설 개요

- 위 치: 성북구 성북로21길 24
- 규 모: 지하1층/지상2층, 연면적 450㎡
- 시설내용

구분	연면적	공간 구성
2층	160㎡	• 기획전시실, 사무실
1층	157㎡	• 상설전시실, 수장고
지하1층	133㎡	• 안내데스크, 자료열람실

※ 주차장 4면(지하1층 옥내 2대, 옥외 2대)

○ 총사업비: 6,820백만원

※ 부지매입 4,211/공사 2,413/설계 136/측량용역 등 60



〈조감도〉